

위험물안전카드															
물 질 명								UN No.							
								화학물질 식별번호 (CAS No.)							
해당법규 및 위험·유해성															
위험물안전관리법						화학물질관리법				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				
유 별						품 명		유 독 물 질	사 고 대 비 물 질	기 타	화 약	폭 약			
제 1 류	제 2 류	제 3 류	제 4 류	제 5 류	제 6 류										
특성		위험성			유해성			환 경 오염성	그 밖 의 위험성		성질·상태				
		금 수 성	폭 발 성	가 연 성	유해가스발생			눈·피부 접촉시 위험성	하천 등 유입 주의			고 체	액 체	기 체	수 용 성
					상 온	고 온	물 과 접 촉								
<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>															
1. 2. 3. 4. 5.															
<긴급신고 번호>: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시군구청(), 한국도로공사 () <긴급신고 내용>: 사고시각, 사고장소, 물질명, 사고유형, 부상자 유무, 운송자 명칭															
<긴급 연락처>															
화 주								운송자							
주 소								주 소							
전 화		(주간) (야간)						전 화		(주간) (야간)					

작성방법

1. 물질명란의 위에 란에는 화학명을 적고, 아래 란에는 통칭명 등을 적습니다.
2. 해당법규 및 위험·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"○" 표기를 하고, 품명란에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적습니다.
3.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"○" 표기를 하고,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적습니다.
4.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·화재 사고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, 처리약제 등을 적습니다.
5. 긴급신고 번호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번호와 한국도로공사의 해당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